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현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2-33
----------	---------

발의연월일: 2022년 3월 11일

발 의 자: 김현희, 윤유선, 강선영, 박성호
송순효, 김동협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기존 조례 제1325호의 부칙 제2조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존 조례의 부칙 제2조 유효기간(2022.12.31.까지)의 삭제
(부칙 제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나. 협조부서: 장애인복지과

다. 입법예고: 2022. 3. 11. ~ 3. 16.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1325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칙 <u>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의 유효 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u>	부칙 <u><삭 제></u>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이 조,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9까지에서 “보건복지부장관등”이라 한다)은 장애인들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주는 보건복지부장관등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주는 인증 신청 전에 대상시설의 설계도서 등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이하 “의무인증시설”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제2항 후단에 따른 예비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증을 받은 의무인증시설의 시설주는 제10조의3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아야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도시공원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신축·증축(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재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외의 자가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④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인증 기준·절차,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절차, 인증기관 지정 기준·절차, 그 밖에 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